

---

#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자료

---

2010. 9.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학교생활문화팀)

## <목 차>

-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강인수) ..... 1
- 학생권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정동섭) ... 40
-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고전) ..... 51
-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혀요(김윤희) ..... 56
- 학생의 권리와 의무(김석언) ..... 60
- 법령정비와 함께 '교육법세터'설립 · 운영이 필요(박재윤) ..... 65
-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박현갑) ..... 68
- 성숙한 학생권리 정착과 조화로운 학교교육을 위한 제언(최미숙) ..... 71
  
-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 74

#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강인수(수원대 부총장)

### I.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 학교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

- 단순한 교육의 대상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학습자를 이해하는 「교육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 법원의 판결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체벌,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반응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민주적인 생활공간이자 안전한 학교를 지향한 학교생활문화 창조

-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타인의 기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책임의 주체임을 인식해나가도록 함.
-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학교 규정의 합리적인 정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통해 자주적인 수범 의식을 제고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을 꾀함.
-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와 균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계 정립

- 제5기 지방교육자치가 시작하고 분권화와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에 관한 역할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추진되면서 교육관계 법령과 조례의 관계나 조례에서 다룰 사항의 기준과 조례 제정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II. 논의의 전제

### 1. 학생의 법적 지위

- 공교육의 법리에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연법과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중핵적인 권리임.
- 학생에 대한 1차적 권리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진 부모에게 있으며(domestic rights), 교원은 자연법상으로는 부모의 신탁, 실정법상으로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한 권리임.
-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인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입장(parens patriae)에서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여(부모대위권-in loco parentis) 교육과 복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권리(police power)를 가짐.
-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은 학생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법적 측면에서는 '특별권력관계'이론으로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교육·지도목적에 위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음.
- “교사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있다.”는 관습도 쇠퇴하여 가고 있으며, 특별권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은 보장되며 그 제한에는 헌법이나 개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 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한 교육의 객체가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보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음.

[참고]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헌법재판소 2000.04.27, 98헌가16, 판례집 제12권 1집, 456)

-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더라도 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련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을 당구장 출입 금지시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심판한 반면(헌법재판소 1993.05.13. 92헌마8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의 위헌확인 심판에서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정도를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심판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요구도 인정하였음(헌법재판소 1996.02.29. 94헌마13).
-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연령 및 재학 상황을 기준으로 청소년층을 유치원생, 초중고생, 대학생으로 3분하여 헌법적 지위를 달리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의 위헌확인 심판 사건에서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시설제한에 관하여 대학생은 변별력 있는 성인으로 영향이 없고, 유치원생은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음.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크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당구장 시설 제한이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7.03.27. 94헌마196).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나, 기본권행사시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의 객체'면도 기본권보장과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고 있으나 기본권 행사시 미성숙에 기인한 보호의 필요성과 학교의 특수성, 예컨대 수업방해의 예방, 교내질서유지 등 때문에 제한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음.

## [참고]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총회('89)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18세 미만)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전문, 총 54개 조항)

- '90년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1년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에 적용
- 협약 가입 당사국은 협약상에 있는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입법, 행정, 사법 등)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

제13조(표현의 자유)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7조(체벌 관련)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2. 정부 정책의 추진 동향**

○ 두발 및 교복 착용 여부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시행(85)-두발자유화를 조례로 확일적으로 규정 시 학교장의 학교규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2003년부터 학생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

○ 2006년에는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두발, 체벌)수립을 위한 기

## 본계획 수립

- 2007년에는 시·도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시 준수사항으로 학생의 인권·자율성·책임·자치활동 보장 및 인성교육 강화를 제시
  - ※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대책 수립(07.3), 32개 학생인권정책연구학교 운영(07)
- 2008년에는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디지털시스템」 추진
  - ※ 전제 : 교육공동체 합의하에 학생생활규정 정비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국정과제 '09년 추진계획 :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조성
- 법무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06년부터 /'10, 49개교) 운영

## 3. 조례 제정의 한계

### 가. 관계 법령

-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나. 판례

- **법령의 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임(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 **권리 제한에 대한 법령의 위임**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법령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정한 것은 「헌법」 제 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임(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 **기관 위임 사무** :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 **법령 위반 판단 기준**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

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지역 실정 반영 :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닌 경우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 1) 법령 위반으로 보는 관점

- 조례로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교원의 학생 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함.
- 학생인권조례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칙은 무효가 될 것임.
-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체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 대체 수단의 확보가 매우 곤

란한 경우, 대체수단의 확보를 위한 부담이 매우 큰 경우, 인권 조례로 인해 학교가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입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2)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는 관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고,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장학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및 학습자의 인권 보호를 주요 정신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거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한 것이고, 이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은 법령의 취지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생의 인권 보장 자체가 학교장이나 교원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학생 차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인 금지가 법의 정신임을 밝히고 제한적으로 차별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므로 차별의 전면 금지가 법의 취지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음.

### Ⅲ. 학생 권리의 검토

#### 1. 학교폭력과 차별의 금지

##### 가. 주요 쟁점 사항

-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교육의 전제이자 최근 학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학생간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예방,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잘 정비된 상태임.
- 반면, 차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법령에서는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함.
- 차별과 관련하여 차별의 개념, 기준, 범위에 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 금지를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별에 대한 입법적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부각됨.

##### 나. 학교폭력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학대를 규정 대상으로 함.
- 「학교폭력예방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경기도조례안보다도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제1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행위’로 제한하여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에 의한 학교폭력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 및 성인에 의한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미성년자로서 학생에 의한 행위는 배제됨.
- 「여성발전기본법」은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희롱을 규정하여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라목)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

〈표 1〉 폭력행위에 대한 주체와 규정 대상 비교

구분	행위주체	규정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	학교폭력: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보호자, 성인	아동학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직원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경기도 교육조례안	제한 없음	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 폭력 행위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 개정, 2011년 1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음.
- 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련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폭력행위 예방교육

법령	예방교육 내용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 제1항 : 학생대상 - 제2항 : 교직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1항 : 교원자격취득 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성매매 예방교육
-----------------------------------	----------

#### 다. 학생 체벌 관련 법령

- 학생 체벌은 「형법」 상해(제257), 폭행(제260조), 업무상과실치사상(제26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상해에 이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법」 제2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음(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함).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자는 체벌이 아닌 다른 지도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 라. 학생 체벌에 관한 판례

##### ○ 대법원 1988.1.12. 87다카2240

- 체벌의 정당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 후순위 수단으로 사용 여부, 적정 방법과 정도, 주의 의무를 들고 있으나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음.

##### ○ 대법원 2004.6.10. 2001도5380

-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을 때리고, 질문하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란 욕설을 한 혐의로 폭행죄와 모욕죄가 적용되어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됨.
-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의 정신을 받아들여 학생 징계 및 지도에 관한 전환점을 마련한 판례로 기존 판례의 기준을 따르면서도 엄격하게 기준을 해석·적용함.
-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교사의 신

체를 이용하여 부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성별·연령·개인적 사정 등에 따른 모욕감 주는 행위 등은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파악함.

○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마1189

- 수업에 25분 늦게 들어간 학생의 뺨을 때렸고 학생은 욕설을 하며 교실을 나간 사례로 교사는 폭행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되는 것으로 봄.
-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봄.
- 체벌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것임.
- 반대의견(3인의 재판관) : 훈계 수단으로 체벌은 허용되며 체벌의 교육적 기준 준수 여부와 형사처벌 판단은 별개이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보다 학생 잘못된 훈육이 더 가치 있음.

**[참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04.6.10)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

○ 체벌의 기준(헌법재판소, '06.7.27)

-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미국연방대법원 *Ingraham v. Wright*, 430 U.S. 651(1977)

- 학생체벌이 헌법상 권리의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는데, 심한 체벌이 자의적인 행위로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주 법에 따른 구제 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함.

[참고] 미국 주 법의 입법 사례

Minnesota: MINNESOTA STATUTES 1966. Chap. 127.45

제1조(정의) 이 조에서 체벌이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s section, 'corporal

1. 도구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 사람을 때리는 행위

2.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불합리한 물리력의 행사

제2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구 종사자는 비행을 교정하거나 비행에

대한 별로서 체벌을 가하거나 가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Tennessee: TENN. CODE ANN. Sec. 49-6-4103

교원은 학교의 규율과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

○ 미국에서 주 법이나 교육구 방침으로 체벌을 금지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이 따를 수도 있음.

○ 일본의 사례

- 문부과학성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장시간 기립, 무릎 꿇고 앉히기, 점심 굶기기 등 체벌 금지함.

- 문부과학성은 이지메(집단 괴롭힘)와 교내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체에 대한 침해와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공표(2007. 02)

-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하에 체벌금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완화(즉, 다음사항은 허용)하기로 함(2007. 02)

○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해 지도하는 것

○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서있게 하는 것

○ 숙제와 청소당번 등을 다른 학생보다 많이 하게 하는 것

○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는 것

○ 떠들거나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 수업 중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잠시 빼앗는 것
- 불가피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가 힘을 써서 제지하는 것

#### 마. 학생 체벌 금지의 법적 과제

- 학생 체벌과 학생 징계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금지할 경우 학생 징계가 늘어날 수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선도 위주의 학생 규율의 철학을 반영하여 과거 '정학' 처분을 징계의 종류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을 포함시켰으며 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징계나 체벌 이외에 지도 방법으로서 교육활동 참여 제한(타임아웃제), 방과후 남기기, 수행평가 점수 감점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를 명료히 하고, 학습권 침해의 문제, 지도수단과 문제행동의 합리적 관련성, 적법절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 대체 지도 수단의 입법례(Indiana 주 교육구인 MCCSC의 방침)

- 교장실 회부, 학부모 상담, 휴식시간 축소, 점심시간 근신, 방과후 근신, 교육활동 참여 제한, 조정 등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화를 반영하여 체벌이 불가피하

게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체벌의 기준을 법령에서 좀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사생활의 자유

### 가. 주요 쟁점 사항

- 두발과 관련한 강제이발, 지나치게 엄격한 용의·복장 규정 등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교육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 휴대폰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 소지 및 관리의 자유와 관련한 타당한 기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음.

### 나. 관련 법령

- 「헌법」 제10조 제1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에는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혹은 인격적 자율권이 포함되므로 용의·복장이나 휴대폰 소지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됨.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는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 05진차204·145·119
  - 두발의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됨.
  - 강제이발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은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

한이라고 하기 어려움.

- 미국에서 두발과 관련한 논란은 1970년 대 전후에 크게 대두되어 소송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연방고등법원 중 제1, 제4, 제7, 제8 고등법원은 두발 규제가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제3, 제5, 제6, 제9, 제10 연방고등법원은 두발 규제가 헌법상 권리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여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없는 상태임.
- 미국 연방고등법원 *Breen v. Kahn*, 419 F.2d 1034(1969)
  - 남학생의 머리는 뒷부분이 목 칼라 선을, 옆 부분이 귀를, 앞부분이 눈썹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 이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연방고등법원은 개인의 머리 스타일 및 길이의 결정은 연방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 자유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수업의 방해 내지 소란행위, 건강이나 안전의 위협 같은 정당화 입증책임을 학교에 부여함.
- 미국 연방고등법원 *Karr v. Schmidt*, 460 F.2d 609(1972)
  - 남학생의 머리는 눈 위로 흘러내리거나 옷 깃 아래로 내려올 정도로 길어서는 안 되며 말총처럼 묶는 것 등을 규제함.
  - 이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연방고등법원은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만큼 연방헌법상의 권리로 보지 않았고 최소한의 합리성 요건의 충족으로 학교의 규제를 인정함.
- 미국 연방지방법원 *Bishop v. Cermenaro*, 355 F.Supp. 1269(1973)
  - 전문계 고등학교 사례로 양쪽 머리는 귀밑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짐.

- 법원은 두발규정이 현명하고 좋은 규정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며 연방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함.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두발규정은 정당한 규제 근거가 됨.

○ 미국 연방대법원 *New Jersey v. T.L.O.* 469 U.S. 325(1985)

- 실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하고 흡연 사실을 물었으나 부인하자 지갑을 수색하였고 마리화나와 관련될 수 있는 종이 발견되자 더 자세히 수색하여 약간의 마리화나와 관련 거래가 의심되는 편지가 발견됨.
-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교육환경 보호는 서로 균형 있게 존중되어야 함.
- 학교에서 수색은 상당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가능하며, 그 한계는 연령·성별, 수색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함.

○ 미국 주 법원 *Price v.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Supreme Court, Appellate Division, First Department, New York, April 22, 2008

- 학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학부모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함.
- 휴대폰 규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주장하는 어느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휴대폰 규제 규정은 보호자나 학생이 학교 전과 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음.
-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기준으로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충분함.

라.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법적 과제

- 두발 등의 규제는 미성숙한 학생을 보호하고 공동체 가치 규범을 가르치는 학교의 사명에 비추어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고, 학생이 유행에 민감하고 퇴폐적 상업주의에 빠져 비행 청소년이 되기 쉬우므로 두발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나 예측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도 있음.
- 예외 없이 소지품 일괄검사의 금지는 교외 소풍, 교외체험학습,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일괄검사까지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안전 보호 책임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고,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될 수도 있음.
- 사생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학습자의 자기결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반대로 용의·복장에 대한 무조건적 자유는 학교별 특성 및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학교별 사생활 자유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참고] 헌법재판소는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교육의 지배는 교육의 본질과 이상에서 멀고 오히려 학부모인 주민 등의 참여에 의한 자치적 교육 운영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함(헌재 2005.12.22, 2004헌라3, 판례집 제17권 2집, 658).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조례에서는 기본권 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불합리한 학교규칙의 심사 및 개정 권고를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다음 10가지를 의무적인 학칙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학생의 용의·복장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학칙개정절차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생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제정·개정되는 학생생활규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 가. 주요 쟁점 사항

- 학생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교육과정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 운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요구도 증

대되고 있는데 국내 판례는 거의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보장 범위나 제한 기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임.

-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다른 학생의 교육권 보호, 학교의 질서 유지 및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됨.

#### 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령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4항에 따라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 학생의 용의·복장이 의사표현의 수단인 경우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제21조 제4항에서 의사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이 있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는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8.9.25. 07진인4150
  - 학생의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집회시 학교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의 요구와 의견이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교사의 권위 등에 의해 학생은 일정한 행동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
- 미국 연방대법원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1969)
  -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검은 완장을 차기로 하였고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정학 처분을 내림.

- 학생은 학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님.
- 막연한 혼란의 우려나 염려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불충분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학생은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폐쇄회로가 아니며 교실은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는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가 되어야 함.

- 미국 연방대법원 Bethel Sch. Dist. No.403 v. Fraser, 478 U.S. 675(1986)
  - 학생회 출마 후보지지 연설을 하면서 성적 비유가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징계를 받음.
  - 학교는 음란하고 무례하며 저속한 언행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484 U.S. 260(1988)
  - 저널리즘 과목 활동 일환으로 학교신문을 제작하는 학생들이 작성한 원고에서 임신 학생의 이야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이야기 등을 발견하고 해당 면을 삭제한 채 학교장이 발간하여 학생이 소송을 제기함.
  - 학교의 후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학교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문법이 맞지 않거나 음란·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편견에 치우친 경우 등을 지도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교육이나 그 밖의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1972년 3월 30일 데모에 참가한 학생 퇴학처분사건에 대한 일본 동경지방법판소 판결
  -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님.
  - 유인물의 배포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장 또는 학생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이나

공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고등학교가 정치적인 집회나 데모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심신이 미성숙해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고등학생이 특정 정치적 사상에만 깊게 빠지는 폐해를 방지해 기초적인 교양을 습득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러한 집회 데모가 폭도화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상의 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이것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이나 공적인 질서에 반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1972. 5. 12 삼리총투쟁 참가학생 정학·퇴학처분사건에 대한 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판결

- 고등학생에게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 또는 학교질서의 유지라는 면으로부터 제약이 있는 점은 어쩔 수가 없음.
- 이 사건에 대한 1979년 항소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학생이 정치 활동을 이유로 결석한 경우, 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함.

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과제

-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취지에 맞추어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취지를 적절히 고려하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정비되어야 함.

- 학교의 교지 등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의 일부로 행해지는 언론의 경우 학교의 교육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경우 해당 언론으로 인해 학교는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어려워지므로 합리적인 제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IV. 현안 정책과제 및 법령 개정방안

### 1. 현안 정책 과제

#### 1) 체벌의 전면 금지 여부

-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징계나 다른 대안 지도 수단을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징계나 다른 지도 수단과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
- 체벌을 전면 금지 또는 엄격하게 더 제한할 경우 학생 지도 수단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

#### 2) 학생 기본권의 보장

- 학생을 인격 주체로 다루는데 필수불가결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 학생의 권리 남용에 관한 제한이나 권리 행사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 3) 학생 징계·지도와 적법절차

- 학생 징계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부터 징계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문제
- 학생징계 및 지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학생의 이익과 학교의 부담을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

#### 4) 민주적인 책임 의식의 확보

- 체벌 등 교원의 학생지도 수단은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만 보장할 때, 법 준수 의식이 약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풍토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학교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
- 학생의 참여를 어떻게 확보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낼 것인지의 문제
- 가정과 학교의 협력과 조화를 기본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책임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의 문제

## 2. 기본 방향

### 1) 학생 체벌

- 학생 체벌은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으므로 가급적 금지 방향으로 나감.
- 학생 체벌보다는 대안 지도 수단을 제도화하고 대안 지도 수단 중에서도 학생의 불이익이 적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효과를 가진 수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참고] 체벌의 금지시에도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한 행위 등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함.

### 2)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학생에게 보장됨을 「초·중등교육

법」에서 선언하고, 세부적인 구현 방법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규정을 개편하여 세부적인 구현지침을 만들고 이를 교육하도록 함.

### 3) 징계와 적법절차 보완

- 학생 징계시 공정성의 확보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 청취 요건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함.

### 4) 권리의 보장과 책임,의무 교육-학생의 권리 한계 설정

- 권리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 행사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초·중등 교육법」의 권리 보장 조항에 함께 규정함.
- 권리의 보장과 책임 내지 의무가 쌍무적 관계임을 교육현장에서 강조하여야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5) 법령·조례·학칙의 관계 체계화

-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법령, 조례, 학칙, 학교생활규정간의 관계를 체계화함.
  - 법령: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원칙적인 보장, 절차의 적정성 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조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학생의 권리 보장 또는 학칙에 위임

- 학칙: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학교생활규정: 세부적인 구현 지침

### 3. 법령 개정방안

#### 1) 체벌의 제한

- 학생 체벌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와 직접적인 체벌의 금지에 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신설) 제1항 단서

- (제1안) 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
- (제2안)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 2)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보장 규정

-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언론, 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 복장, 휴대폰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개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학생의 권리 보장 한계 규정

- 학교에서 학생 권리를 신장하되 그 한계에 관하여도 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함.
- 학생의 권리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 제18조의4에서 정한 일반적인 인권 보장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학교사명과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한계에 관하여는 시행령과, 시·도 별로, 학교별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신설)

-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①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 4) 학생 징계의 종류 추가 및 적법절차 보장

- 특별교육이수와 퇴학 사이에 적정한 중간 징계의 종류가 없으므로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출석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3의2호(신설)

- 3의2. 출석 정지

[참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학교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출석정지’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출석정지나 전학이 징계 행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참고] 미국에서 정학(suspension)은 보통 단기간의 등교정지(5-10일 정도이며 5일까지는 학교장이, 그 이상은 교육감이 결정하기도 함)이고, 퇴학(expulsion)은 잔여 학기 또는 잔여 학년도에 걸친 정학을 가리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학 사유는 모호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만, 징계 사유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학칙에 일정 부분을 위임할 수밖에 없음.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개정)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3. 퇴학보다 가벼운 징계가 잦은 학생
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징계를 대신하여 불이익이 약한 지도 수단으로서 징계 성격의 전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신설)(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함)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를 설정하여 징계시 적법절차에 대한 취지를 강조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개정)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5) 대안 지도 수단의 근거 마련 및 적법절차 적용

- 교원의 학생 지도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징계보다는 우선적으로 학생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대안적인 지도 수단(progressive discipline)을 선택하도록 함.
  - 행위의 경중에 비례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신설)

- 제18조의6(학생의 지도) ①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은 지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 방법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교원의 학생 지도 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학업 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을 열거함(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방법은 학교장이 행하도록 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신설)

- 제31조의5(학생의 지도)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학급교체

8.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 중 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 방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6)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개정), 제4항(신설)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학부모의 참여 유도 및 책임 부여

- 특별교육이수는 일종의 개선 프로그램이므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함.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위의 징계 종류를 선택하게 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개정)

- 3. 특별교육이수(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미국 Indiana 주 MCCSC에서는 퇴학의 대안으로서 특별교육이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학부모가 특별교육이수의 기간, 내용 등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학 처리하도록 함.

-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려서 공동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신설) 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4. 학생 권리 신장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과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례 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례가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제도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모순·상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대법원에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교원양성교육을 포함한 교직원 및 학생의 법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함.

-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미래의 건전한 시민을 기르는 학교의 역할에 충실한 학생생활규정이 되도록 유도함.
- 시·도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사명과 학생의 인권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학교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획일적인 규제를 자제함.
- 교육감이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지역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의 권리와 책임 의식이 길러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학생자치 법정, 그린 마일리지 방안 등)을 개발·제시하도록 함.

## 5. 관련 법령 개정안 대비표

###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u> .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u>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u> .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u>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u> .
<신설>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①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신설>	제18조의6(학생의 지도) ①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은 지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 방법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li> <li>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li> <li>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li> <li>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li> <li>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li> <li>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li> <li>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li> <li>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li> <li>9. 학칙개정절차</li> <li>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삭제 &lt;2005.1.29&gt;</p> <p>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u>각 호</u>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li> <li>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li> <li>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li> <li>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li> <li>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li> <li>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li> <li>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u>포함한 학생생활지도</u></li> <li>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li> <li>9. 학칙개정절차</li> <li>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삭제 &lt;2005.1.29&gt;</p> <p>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u>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내의 봉사</li> <li>2. 사회봉사</li> </ol>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u>각 호</u>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내의 봉사</li> <li>2. 사회봉사</li> </ol>

<p>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p> <p>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li> <li>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li> <li>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li> </ol> <p>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p>	<p>3. 특별교육이수(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3의2. 출석 정지</p> <p>4. 퇴학처분</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u>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u></li> <li>2. <u>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u></li> <li>3. <u>퇴학보다 경한 징계가 잦은 학생</u></li> <li>4. <u>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u></li> </ol> <p>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p> <p>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31조의5(학생의 지도)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u></p>
--	---

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안) 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

(제2안)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학급교체
  8.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 중 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 방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 학생권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학생권리와 학교교육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교육지원본부장)

## 1. 전체적인 입장

□ 최근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논란에 맞추어 교과부가 학생권리 신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에 관한 역할 관계를 검토하고, 법령과 조례의 관계나 조례에서 다룰 사항의 기준과 한계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고 봄.

□ 인권존중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부인하지 않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보장을 이유로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영역마저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신뢰관계로 형성된 교사-학생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교총은 그동안 체벌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의 혼란 야기 /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무상급식 전면 도입 등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포장 되고 있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행정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해왔음.

또한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여타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우선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음.

□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주제발표에 대한 교총의 총론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폭력으로 비취질 수 있는 신체 및 도구에 의한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까지 체벌로 규정하려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함.

폭력, 체벌, 교육적체벌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 다만, 현행 학교규칙에 체벌도구는 지름 1.5cm내외로 길이는 60cm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는 극히 제한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과정은 필요하리라 봄.

2. 학생들의 요구가 강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한 내용을 기초로 선언적 차원에서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의 장이 '학생의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사항(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

인의 권리를 보호)에 의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자의적인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담아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학생징계의 종류를 다양화·세분화하고 적법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생징계는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즉각 이루어져야 비교육적인 파급효과를 막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이러한 고려없이 모든 학생징계를 단순히 징벌적 성격의 제재로만 취급하여 일정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는 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적법절차를 요하는 징계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즉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적법절차를 요하는 징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4. 학생징계를 대신하여 전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과 관련하여, 전학조치가 선택사안이 아닌 징계종류의 일부로 신설되어야 하며, 특히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일지라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없이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

5. 교원의 학생지도 방법으로 열거된 내용과 관련하여,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의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한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퇴장학생에 대한 전담교사제(전문상담교사)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임.

□ 교총은 이번 토론회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체벌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되어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 2.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입장

### 가. 조례 제정의 문제점

#### ○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시킨다.

-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봄.
-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해 학교현장 혼란 야기. 예를 들어 체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제한적 허용 입장인 반면, 조례가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다수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
- 학생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사생활의 자유, 자치참여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법적 실익이 없음.

#### ○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 인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지 않음.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무상급식 전면 도입 등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포장되고 있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 두발·복장 자유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휴대전화 소지 제한 금지 등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음에도 조례를 통한 일률적,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음.
- 조례 제정을 통한 일률적인 규제가 학교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 사안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니며, 학교마다 가르치는 학생이 다르고 지역여건상 학교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 단위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교육청 등 교육관리 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감시·감독하거나, 학교규칙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비인권적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 단위학교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큼.
- 교원의 76.4%가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93.4%가 현재 학교질서 및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현

장에 적용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즉 학교 적용시, 실익보다 문제점이 더 많음.

-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는 것은 교권과 충돌되지 않지만, 학교의 고유한 교권내지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큼.

#### 나. 조례 제정에 대한 대안

○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해야한다.

- 조례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학생의 다양성 존중, 비민주적 학교운영 개선 등이라 볼 때 이 정신을 헌장으로 담아내고, 학교규칙(생활규정포함)을 통해 교육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3.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시각

#### 가. 인권의 개념 및 특성

○ 인권의 개념 및 특성

-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는다.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즉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자기의사를 표현하거나, 인종, 국적,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살 권리 등을 말한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 국가나 법이 만든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하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다.
  - 일정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권리이며 현재의 국민은 물론 미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영속적 권리이다.
  - 국가나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 나. 인권 법제화의 기원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지지 않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국제연합 헌장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외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 아동의 권리

-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아동권리사상은 1922년 아동복지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글란타인 잭(Eglantyne Jabb) 여사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으로 싹이 텃다. 그는 “인류는 아동들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그의 선언문을 전문과 5개조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채택하였다. 이어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유엔 아동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1959년 유엔 아동권리선언 채택 20주년 기념의 해인 197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지구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았다. 이 협약의 주요 원칙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서 1990년 9월 2일을 기해 세계 191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이 되었다.

#### 다. 인권의 교육법적 접근

-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의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에 언급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는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또 교육기본법은 총칙을 포함하여 29조로 되어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등이다.

### 4. 외국의 사례

#### 가. 미국의 인권 흐름

- 1960년대까지 부모대신의 원리(the doctrine of in loco parentis)에 따라 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도 학교가 학생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널리 인정됨.

- 1960년대말부터 변화가 있음.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들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평등관계로 바꿈과 동시에 교내의 규율을 중전의 보호관계로부터 상세한 규칙에 따른 법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게 됨.
  - 그 결과 학생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을 위한 조치에서도 적법절차를 요구한 결과, 교실에서의 섹스표현, 미혼모, 폭력, 총기사건, 마약매매 등의 무질서가 증가했고, 학생과 교사간의 인간적인 교감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됨.
- 그러자 1980년대부터 연방대법원은 보호주의로 회귀하기 시작.
  - 연방대법원은 학생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성인의 그것과 같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근거로 학교를 특수한 환경이라고 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미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분명하게 주(州)교육법에 규정해 놓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학구 교육위원회는 학생행위규칙(the code of student conduct)을 제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부모가 이의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다툼이 없음.
- 이를 우리의 경우로 해석해본다면,
  -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에 대한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 법률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제한할 기본적 인권의 항목과 내용을 명령이나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학생들이 자유로운 것은 아님. 두발과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보장받는 듯 하며, 그 외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생과 미국 학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

나. 미국 학생인권 주요판례(학생과 학교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례)

- Tinker 사건 - 학생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부당
  - Tinker의 2명의 학생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대공표와 함께 연말까지 단식하며 휴가기간 동안 완장을 착용하여 휴전에 대한 지지를 나타냄으로써 발생한 사건임. 이에 지역교장들은 학교에서 완장을 착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만약 학생이 거부하면 완장을 착용하지 않고 등교할때까지 정학시킬 것이라는 정책을 채택함. 이들은 완장을 착용하고 등교하였기에 정학처분을 받았고,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 완장을 착용하는 것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침해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의 보호내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한 학교당국의 행위는 위헌임.

○ Fraser 사건 - 학생의 표현의 자유 일부제한 타당

- Fraser(고등학교 학생)은 학생회 간부후보로 출마한 친구를 지원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는 일과중에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교가 후원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였음.

Fraser는 연설동안, 교묘하고, 생생하며 분명한 성적비유를 사용하였는데 집회에 참석한 몇몇학생들은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일부는 연설에서 암시하는 성적행위를 몸짓으로 표시하여 다른 학생들을 당혹케 함. 연설후 Fraser는 정학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 연방헌법 수정 제1조(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의하면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관점들을 융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적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 학교의 경우에는 동료학생들의 감정 -을 고려해야만 한다. 성인의 대중연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공립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인수준의 무례한 표현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저속하고 무례한 용어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육의 적절한 기능인 것이며, 외설적인 말을 금지하는 학교의 징계 규칙과 연설 전에 한 교사의 경고는 외설적 연설이 징계될 것이라고 학생에게 적절한 경고를 준 것이므로 적법절차 조항을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의 징계처분은 위법이 아님.

○ Hazelwood 사건 - 학생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타당

- Hazelwood East 고등학교를 졸업한 3명의 학생은 학교신문 편집위원으로서, 재학중 학생들의 임신경험과 이혼이 학교안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특정신문호에서 삭제되자, 연방헌법 수정 제1조(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침해되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 연방헌법 수정 제1조(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는 다른 환경에 있는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교원이 학교 주관 표현활동에서 학생 언론의 방식과 내용을 편집 차원에서 규제하더라도 교원의 조치가 정당한 교육적 관심에 적절히 관련되는 한 이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지 않음.

○ Frederick 사건 - 학생의 표현의 자유제한은 타당

- 학교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볼수 있도록 학교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했고, 당시 18세였던 Frederick은 방송카메라가 오자 '예수도 마약흡입용 파이프를 흡입하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음. 이에 교장이 현수막을 빼앗고 10일간의 정학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 현수막의 내용이 불법적인 마약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마약의 사용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교장의 판단은 적절함. 따라서 학교관리자가 마약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압수한 것과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한 것이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5. 쟁점별 문제점

### 가. 체벌 전면금지

-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지양되어야하나,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함. 대안 제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체벌금지에 관한 조항은 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7항) 위반의 소지를 띠고 있음.
  - \* 시행령 제31조제7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교원의 생활지도 어려움 가중 및 학습권 침해
  -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인한 교원들의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간주되고 있음. 이를테면 무단결석, 흡연, 음주 등 교칙위반 학생은 물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아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외면한 채 이미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경우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증폭
-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의 목적이 지도나 교정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교육적 지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벌을 피할 수는 없음. 즉, 현행 법률에서 교원의 과도한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체벌은 제한하면서도 체벌 시행여부 자체는 학교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사안 중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51.6%, 반대 46.2%로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러나 집단별 비교에 있어서 교원은 체벌금지 반대가 57.5%로 찬성(40.2%) 보다 높게 나타나 찬성이 높게 나타난 학생(57.0%), 학부모(57.1%)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체벌 대안

○ 전제조건

- 교사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교원의 잡무경감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 신뢰를 기초로 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대안

- 현행 학생징계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고등학교 해당) 등 4가지로 분류됨. 따라서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면서 강제성(구속력)이 수반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
- 가급적 체벌을 지양토록 하되, 단위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벌범위, 기준, 절차(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u>학부모 소환</u>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학부모 특별교육참여 제) <u>학급교체</u> <u>강제전학</u> <u>출석정지(정학)</u> 퇴학

나. 두발, 복장 자유화

- 현재 대다수의 학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복장 등의 규정을 교칙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권리와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동의하에 행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조례)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간의 합의와 교육적 필요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임.
- 학생의 개성실현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자칫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을 초래하고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미성숙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과거 대다수 중·고교에서 두발·복장의 자율화 이후 심한 흥역 끝에 자율규제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두발·복장 등의 제한 및 규제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일 단위학교 교칙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교칙이 수정될 수 있도록 권고·시정하면 될 내용이지 조례로 강제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되, 단위학교는 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반드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교복 착용 관련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할 소지 우려
  -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 교복 착용 이후 1983년 학생의 교복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대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게 됨. 그러나 교복 자율화 이후 사복을 입게 됨으로써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형성, 탈선 증가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 1985년부터 복장 선택권한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변경한 바 있음.
  - 학생은 개성을 실현 할 수 있는 인격체임과 동시에 미성숙자로서 ‘교육·훈육의 대상’이라는 점 상기해야함.

#### 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반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학교별로 교원의 교육적인 판단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해야 하고 학생의 건강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교단위로 가능한 보충수업 시간의 총량을 규정하는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의 조정, 수준별 교육 및 교사의 동일반 연속 집중강의 결정 등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우수교사 초빙권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해나가는 것이 타당함.
- 입시준비로 인한 학원 수강으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고 학습 부진아들에게는 자기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커 학교(생) 경쟁력 손실이 우려됨.

#### 라.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금지

-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소지품 검사행위 등은 인권침해 요소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획일적으로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할 수 있음.
-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실효성 담보 요구
  -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중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규칙이나 규정 안에 위반시의 벌칙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변경부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도 통지하여 벌칙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일기검사의 경우 순기능적 교육 측면 배제
  - 일기검사를 통해 논술 및 작문실력향상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일기는 일상생활 및 장래생활계획을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과정이자 글쓰기 지도의 사례로 활용되고 있음.
-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유해매체나 위험물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물품 도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등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감독을 대신하는 행위로서 이는 단위학교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

마.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안임.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학생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합리·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함.
- 학생들의 참여는 자칫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고 깊이있는 안목보다는 근시적인 시각이 앞서 인기영합주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낳고 이는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인격체로서 학생의 참여권리는 존중받아야하나 학생은 미성숙자로서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함.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범위 기준이 모호함.

바. 자치활동의 권리

- 교내·외에서의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은 자율적으로 보장되어야하나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음.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은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순수한 학교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통제 혹은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병행되어야 함. 학교교육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사.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 교내·외 행사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학교 행사(프로그램)까지도 제한할 수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임의적인 학교행사로 인해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는 자율적인 학교운영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보고와 같은 내부기능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고 전(제주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장)

## I. 기본 방향 수립시 유념해야 할 준거들

### □ 학생 인권과 학습자 윤리에 대한 교육입법 정신의 반영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 원칙을 천명한 교육기본법 (§12①)
  - 인권존중이 학습자 규정의 제1 조항으로 언급된 입법 정신을 이해할 필요
  - 구체적인 입법노력이 없었기에 조례제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
  - 법률에 위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례 제정의 위법성을 논하기는 어려움
- 설립경영자 및 학교장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보장 의무
  - 2007.12.14 이 조항 신설이후 이렇다 할 구체적 입법노력이 없었다는 점
  - 법률(국립), 조례(공립), 규칙(사립) 형태로 입법될 수 있음을 예고한 규정
-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 학교규칙 준수, 교원 교육활동 방해 금지 의무

- 교육기본법상의 의무(§12③) 확립을 위한 구체적 추가 입법 노력이 필요
-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에 의한 지도(징계)의 원칙적 금지 입법정신
  - 이른바 신체징계(체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법정신
  - 체벌을 어떻게 유형화하여 그 허용범위를 구체화 할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교육상 불가피성의 판단 주체가 교장으로 설정된 점(학칙으로 규율 가능)
  - ‘사랑의 매’라는 불문법적 인식과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학부모단체 인식
- 학생 징계(체벌포함) 규정마련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필요성
  - 학부모의 학생교육 관련 의견제시권과 학교의 존중의무(교육기본법 §13)
  - 학생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무(초교법 §18②)

## 학생 인권 침해 관련 법현실과 사회의 인식 반영

- 체벌 및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실증
  -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예외의 경우인지

## 확인 필요

- 인권침해의 원인이 법률, 제도, 교원, 교육현실등 어디에 주 원인이 있는지
  - 입법 개정과 제도개선, 그리고 교원교육과 의식교육의 수준 결정에 필수
- 학생인권단체, 교직원단체, 학부모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조사 필요

## □ 쟁점 사안에 대한 사법부 및 인권기관의 판단(판례) 고려

- 발제자의 대법원의 판례로서 잘 소개됨(객관적 타당성 잃은 경우에 주목)
  - 차별의 불가피성,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
- 헌법재판소의 해석 고려
  - 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보류상태이나 제한적 지도방법(원칙적 금지) 해석
  - 3인 의견에 주목(훈계수단으로서 차별가능, 교육적 처벌과 형사처벌은 별개)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인권 침해 관련 권고문 참고(차별, 일기검사 등)

## □ 규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교육에의 영향과 근본적인 대처법 여부

- 일체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을 경우 학교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검증
  -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방기 경향, 학습분위기 미조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 체벌을 대신하는 교육적 행동수정 및 지도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교원양성기관, 교원연수기관에 있어서 대처와 교원자격, 임용검정과의 연계

## □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간의 역할 분담 차원의 검토

- 국가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라는 차원 접근
- 학생 인권관련 각 사항이 국가표준화를 요하는지, 학교특성이 필요한지 판단

## II. 법령 개편안에 대한 의견

### □ 학생 체벌에 관한 1,2,3안에 대하여

- 제1안(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여 학생 지도를 할 수 있게 함)의 취지는 옳으나 대체벌 지도수단을 열거하여 통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제자가 예시한 시행령 제 31조 7항의 제1

안의 구체적 지도방법은 학칙제정권자(학교장)에게 유보하고 그 제정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적정 절차의 보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 제2안(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 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좀 더 현실적이고 체벌로 인한 사회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적정한 체벌도구(이른바 사랑의 매, 회초리)까지 금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교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체벌이 폭력행위로 비화되는 것은 체벌도구와 방법(부위와 횟수)에 비통념성에 있었지, 적정성을 갖춘 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여론은 아직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며 교사의 '학교행동 수정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신뢰'가 보완된다면 충분히 허용 기준에 의해 통제 가능하다고 본다.

- 특히, 개정안에서 지금의 규정이 학생의 징계의 일환으로 학교장의 징계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교원'으로 확대하여 교사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다만, 일상적인 지도로서 체벌을 징계의 일종으로 삼는다면, 뒤에 제안된 '징계위원회'절차를 거쳤는지가 교사 체벌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징계와 구분지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 제3안(각 시·도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국가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학교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문제를 지방으로 넘기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지도 방법의 지역별 차별화는 결국 교육여건의 다양화 측면 보다

는 교육환경의 격차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본다.

##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하여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 조항(§18의4)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은 그 영향을 재검토해 볼 일이다. 국가 표준화된 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사례는 16개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게 나타난다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급별 및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 모든 학교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고, 구체적인 보장기준은 학칙에 위임하는 것이 학칙에의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길이기도하며, 이는 학칙의 준수도를 높여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정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 그러나, 과거 교과부가 체벌과 관련하여 예시한 「○○학교 생활지도규정」 방안을 형식적으로 제정하는 관례에서 탈피하도록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규범 제정·준수 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교사로서도 학교생활규정에 포함될 경우 중대한 위법판단의 핵심기준이 됨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제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학생의 권리의 한계에 관한 신설 개정안은 지나친 학생인권의 강조가 가져올 수 있는 교원의 지도활동 위축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인 공동 학습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일응 필요성이 인정

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교육기본법의 학습자 조항에 학칙의 준수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의 방해나 학내 질서문란을 금지(§12③)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사족(蛇足)적인 규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학습윤리 확립 시책 혹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을 학교별로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 □ 징계와 적법절차 보완 방안에 대하여

- 학생 징계시 공정성의 확보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하여 관례적으로 운영해온 징계위원회를 초중등교육법(§18②)에 보완하여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고 효과도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교원징계위원회와의 혼돈될 수 있으므로 「학생징계위원회」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 내의 체벌을 포함한 각종 생활지도규정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공립학교) 및 자문(사립학교)에 앞서 전심 위원회로서 기능시키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안해본다. 그러나 현재에도 필수로 되어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 학내에도 이런 저런 위원회가 너무 많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법령·조례·학칙의 관계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 법령에는 학생의 권리와 적정절차의 보장, 징계 및 지도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고, 학칙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학교설립 유형별로 규범 수준을 달리할 필요는 없으나 학칙에는 학교의 목적, 학교급별, 성별 특징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생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으나 「16개 시도」 별로 달리 적용함직한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도별로 다른 학생인권 보장 조례로 인하여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교육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학칙 위임을 위한 것이라면 대동소이한 형식적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여요!!

-학생들의 변화된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

(서울 고척고 교사, 김윤희)

## 1. 시대 변화와 낙후한 교육시스템

그 기본 프레임이 1960,70년대 형성된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철지난 옷처럼 요즘의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 국민소득 200불시대, 고도 경제성장(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인)을 위해서는, 인내력과 금욕정신을 지니고 하드워킹하는 노동력 육성이 필요했다. 학교교육은, 군대식 상명하복의 행정체제와 선착순식 치열한 입시경쟁위주 교육을 통해,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노동력의 양적 투입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민주와 복지가 삶의 지향점이 되어 버렸고, 소비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력육성이 필요한 시대이다.(과거와 달리 노동력의 양적 투입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시대이다.) 기성세대가 겪었던 것처럼 상명하복 행정체제와 금욕과 인내의 하드워킹 노동(공부)만을 강요하는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맞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고통에 빠져있다. 군대의 소대장 같은 교사의 역할은 불가능한 가운데, 교사라는 권위와 구심점이 이미 깨어진 무질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는 왕따 같은 폭력과 구성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이기주의, 선정적 상업대중문화와 자폐적이고 일탈적인 도피문화가 만연하게 되어버렸다. 이대로 간다면, 폭력과 일탈의 지속과 함께, 히키코모리 100만, 니트족 100만의 일본상황이 곧 도래할 것 같은 실정이다.(온라인 상, 강박증, 대인공포증 카페만도 수십개인 상황임.)

## 2. 학생들의 변화와 사회적 권리인정의 필요성

특히 2000년대 이후 학생들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들의 제 2의 삶의 공간을 발견했다.(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신과 인간의 직접 접촉을 가능케 했듯이, 인터넷은 학생들과 세계와의 접촉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대중음악과 연예인 문화 등 대중문화 공간을 장악·주도하고, 알바 공간을 통해 약간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소비문화의 지존(여고생)으로서 재벌기업 등 생산세력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한 존재이다. 이렇게 부쩍 커진 사회적 힘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유예하고 오직 <공부만 해야 하는 유아> 취급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세대간 단절과 반발과 적개심은 심각한 수준이다.(어른들에게 등 돌리고, 욕이 일상 언어화되고, 소위 '싸가지 없게' 됨. \*촛불집회 때의 분노와 적개심). 여자나 흑인에게 보통선거권을 주듯이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분을 인정하고 체제내로 포용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사회적 참여권과 참여공간 보장이 될 것이다.

### 3. 학생문제 해결책으로서의 학생자치활동

이상의 변화된 학생상황과 학생들의 사회적 영향력 성장을 고려할 때, 이 시대 학생집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응책은 바로 학생자치활동 보장이다.

첫째, 학생의 학교생활의 구심점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더 이상 힘들어진 상황에서(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의 일 순위는 친구임), 새로운 학교생활 규율과 질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공동체적 질서 형성일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 생활질서>야 말로, 교사가 소대장이나 조교 역할을 하는 상명하복적인 학생들의 구시대적 학교생활문화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주체성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의 근본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학교폭력이나 이기적 문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러한 학생들의 공동체적 생활문화는 오직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 학생자치활동 보장은,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일정 권리 인정, 즉 학교생활 결정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학교에서부터 미래세대를 현실에 참여시켜 책임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은, 민주 시민과 창의적 인재육성의 첩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나 시민적 권리를 오직 '공부와 출세'라는 명분하에 후진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박탈하고 억눌러 왔다. 그것은 식민지와 전쟁을 거친 극빈상황과 독재와 냉전체제 속에서 오직 '죽자고 성장만'을 추구하느라 '인간'으로서의 학생집단을 되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기성세대의 학생집단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역사적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어른들은 1960,70년대의 자기들이 요구받았던 학생상의 관점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재단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자치활동 보장 없는 학생인권 보장이나 시민권적 표현의 자유 보장은 알맹이 없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자치활동은 그러한 기본권의 핵심 내용이며,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학생 인권과 표현 자유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은 낙후한 학교 교육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교사-학생 관계의 질적 변화와 유대를 통해, 교육행정-교육방법과 내용 등 전체 교육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주목하며, 기성세대 보다 훨씬 유연한 변화능력을 지닌 학생집단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을 창조하고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교사-학생의 노력이야 말로, 전체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한 핵심적 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집단의 정의감 등 도덕적 건강성과 인터넷 능력 등 유능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상기한다면, 교사-학생의 굳건한 유대관계는 교육선진화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개정안에서는 <학생자치활동 보장>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개정 내용 예시이다.(2005~7년의 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중 대표발의자 구논희와 최순영 등의 안 참조함.)

현행	개정안
<p><b>初·中等教育法</b></p> <p>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獎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p>	<p><b>초·중등교육법</b></p> <p>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p> <p>①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생회를 둔다.</p> <p>②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칙 중 학생회와 학생자 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li> <li>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li> <li>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li> <li>4.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li> <li>5. 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6. 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li> <li>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li> </ol> <p>③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p> <p>④그 밖에 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회 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 4. 교과부의 입장과 학생인권보장 조항

교과부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이 기존의 교권과 학교질서를 흐트릴까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 등에서 준비가 덜 된 모습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학생을 위해, 학생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과 이미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들에서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인권보장과 학교교육선진화 내용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발전 수준에 부합하고, 학교교육의 목표와 지향에서의 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각 지방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 움직임, 우리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그런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적으로는 학생문화와 교사-학생관계를 포함한 학교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교육 선진화의 디딤돌을 놓는 것으로 본다면, 좀더 느긋하게 지방과 현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서와 안정에만 천착하고 눈앞의 사안처리에 급급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안의 초중등 교육법 18조 4항의 <학생인권보장> 조항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증시되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고, 5항에서는 권리의 한계와 제한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 웅색한 느낌을 준다. 학생 인권, 기본권 인정을 최소한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각종 기본권에 대한 언급과 함께 보장 조항을 확실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시이다(상기 발의안 참고함).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

-구호와 선언의 흑백 논란을 지양하며-

(충북 금천고 교감 김석언)

## □ 학생인권 상황과 이슈

- 1969. 고등학교 교련교육 필수 이수

1969년 교련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면서 학교의 병영화(학생회장→ 연대장, 교복 외에 교련복을 착용, 사열 분열 등 군사훈련 실시.)

1996년 군사훈련 제외 → 응급처치 위주의 실용교육

- '82.01.02. 교복 및 두발 자유화 전격 발표 : '83.3.1부터 시행
- '85.10.16. 두발 및 교복 착용 여부 일체를 각급 학교별로 학교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시행토록 조치
- '89.11.20. 유엔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90.09.02.발효, '91.11.20. 우리나라 비준)
  - ※ 우리나라는 비준 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 허가, 상소권 보장' 등 3개 조항에 대해 국내법과 배치 사유로 유보
- 1990년 청소년헌장 제정 선포(체육부)
- '97.06.02. 제4차 교육개혁위원회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 ◆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생 지도 방법의 정착

체벌은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적인 생활 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학생 생활 지도 방식을 정착시킨다.

-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생 체벌을 금지한다.
- 학교 내 또는 동아리 내에서 상급생의 하급생에 대한 체벌 관행을 금지한다.

#### ※ 체벌의 정의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함.

- 체벌 금지에 따라 교사가 학생 지도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벌'이 아닌 '벌(罰)'은 학교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다양한 생활 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 체벌 금지의 기본 정신을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하고, 구체적인 관련 사항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학교에서 공용어 사용의 일상화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순화된 언어 생활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공용어 사용을 일상화한다.

- 학교 공식 활동이나 집회 및 수업에서 공용어 사용을 일상화한다.
- 학교 내에서 욕과 폭언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 공용어의 정의

① 나이와 신분을 뛰어 넘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두루 쓰이는 격식 있는 말

② 예사 높임말에 해당되는 언어 표현 형태로서 ‘합니다’, ‘하세요’, ‘해요’ 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말. 아주 높임말에 해당되는 존대어와는 구분되는 말.

- '97.12.13. 초중등교육법 제정(현 제18조)
- '98.02.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현 제31조 7항)
- '98.10.25. 청소년헌장 개정 선포(문화관광부)
- '98.12. ~ 학생·학부모 등이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112 신고
- '99.01. 「집단따돌림 및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 근절대책」 VIP보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현행법을 구체화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합의로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체벌규정을 만들도록 함

※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란 형법상 정당행위를 말함.

- '92.02. 교사 체벌권 입법화 추진 시도
- '00.05. '노컷(Nocut)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일부 학생들의 '두발제한 반대운동
- '00.10. 교육부 두발 제한 폐지 발표(두발 자율화 :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02.06.26.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예시안)'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관련 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안' 또는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체벌 허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02.9.9.)

- '03.0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권고

-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 수행
-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

- 2005 ~ 2006년 광주·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
- '05.10.06. 부적격 교원대책(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부령)
- '06.03.13. 최순영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소위 학생인권법) 발의
- '06.07.07.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방안 관계부처 협의(보건복지부)

- '06.07.26.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식
- '06.08.30.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 기자회견
- '08.04.30.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가지 인권가이드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 언어폭력 금지, 강제 학습 금지, 학생 자신의 동의 여부 원칙 적용 등
2. **차별 금지** : 성적·성별·나이·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소수자 배려와 다양성 존중 등
3.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등
4.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 대표 선출의 민주성,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 보장 등
5. **신체의 자유** : 체벌·강제 이발 금지, 성폭력 금지, 사적 심부름 금지, 행사 동원 금지 등
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동의에 기초한 서약,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권 보장, 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등
7. **표현의 자유** : 매체 활동의 자유, 학내 집회·시위의 자유, 교외 활동의 자유 등
8.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 편지 공개 금지, 휴대폰 내용 열람과 공개 제한, 소지품 금지의 제한, 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
9. **정보 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과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학교 당국의 정보 투명성 보장
10. **건강권** :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유, 학교 급식의 질 확보, 적절한 건강 검진 등
11. **안전권** : 안전을 위한 설비, 통학로의 안전 확보, 안전교육 실시 등
12.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문화 동아리 지원, 실내 휴식공간의 확보 등
13.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징계 규정의 정당성, 징계의 남용금지, 예비범죄자 대우 금지, 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등
14.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 노동권 보장,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등
15. **권리를 지킬 권리** : 이의 제기자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 조치 주의, 구제 절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등

◇ 체벌관련 주요 판례 ◇

- '00.01.27. 헌법재판소 판결 '폭행죄라도 정당행위는 죄가 안됨'
- '04.06.10. 대법원 판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체벌은 유죄'
- '04.10.05. 헌법재판소 판결 '체벌 조항 위한 심판 청구 각하'
- '06.07.27. 헌법재판소 판결 '체벌은 허용되지 않음'
  -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등교육관련 권고 ◇

- '02.09.09. 국가인권위,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권고
- '05.03.25. 국가인권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 '05.05.09. 국가인권위, 스마트카드 학생증 강제 발급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권고
- '05.06.27. 국가인권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05.08.31. 국가인권위,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권고
- '05.09.28. 국가인권위, 출석부번호 부여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 권고
- '05.12.26. 국가인권위, 여학생 생리 결석 관련 인권침해 제도 보완 권고

□ 학생 인권 문제 인식

- 권리와 의무 :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의 손을 이루는 것처럼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관계이다.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실현된다. 학생 인권과 문제와 함께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학생의 의무는 무엇인가? 또한 학생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점이다.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는 '학교 내 인권'(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천·지·인에 대한 두려움(경외심)!

-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

-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의 잘못된 행위를 교육적 훈육과 훈계로 교정하는데에는 어려움이 크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체벌에 대한 내성도 있어 더더욱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교사와 한 고등학생과의 대화(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

'내가 안 그랬는데요' / '누가 그랬지?'

'저는 몰라요' / '네 아버지와 얘기를 해야 겠구나. 전화번호 부르거라'

'잘못했어요. 제발 부모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화가 풀리실 때까지 맞을게요.'

[부모 그늘에 숨는 아이들 : 교감과 학부모와의 대화]

'우리 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뺨을 때렸다는데요. 그러니 아이가 반발을 할 수 밖에요' / '아이의 말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 / '아이가 선생님에게 대든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 '정말로 선생님이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믿으십니까?'

-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문제
  - 1:29:300, 3의법칙
  - 소품종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자치 역량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주체 논란
- 어떻게 훈육, 훈계할 것인가?
  - 대체벌 : 지벌, 덕벌
  - 학생 징계의 기록
- 교원의 책임 : 형사벌과 행정벌
- 인권조례 제정은 선동 구호인가? : 체벌금지, 0교시, 보충, 야간 자율학습
  - 찬반, 흑백논리적인 소모적인 논쟁 지양
  -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두발, 체벌, 자율학습 등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 교육적 해결은 한계에 이르렀는가? 또 다른 형태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인가?
  - 법령, 조례 등 법적인 문제보다 단위 학교 공동체의 실천의 문제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녀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의 교육관과 자녀가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한 후의 교육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법제화, 국가의 두발자유화 선언 요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 및 법적 강제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절도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절도 행위가 상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령이나 제도보다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구성원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가 중요한 때이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교육 참여는 오늘의 학교현장의 제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학부모들의 학교관, 교사관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교 및 교사와의 거리를 좁힐수록 교육 문제를 둘러싼 술한 억측과 소문을 잠재우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학교에 일임한다는 태도로 방관한다거나, 교사의 책임만을 추궁한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기만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홈페이지 활용, SNS 등 학부모 상호간, 학부모와 학교간 대화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줄탁동시(茁啄同時)'는 가장 이상적인 사제시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알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찌는 것을 '줄(茁)',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 법령쟁비와 함께 ‘교육법센터’ 설립·운영이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박재윤)

오늘 강인수 교수가 발표한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 학생의 사생활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쟁점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법령개정방안까지 제안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과 관련 정책적 노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토론회도 이 논란과 관련하여 학생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본다.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론 등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어서 오늘 제안된 방안들이 잘 검토되어 입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오늘은 ‘인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권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논의가 기대된다.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법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모든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100% 보장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마치 복잡한 교통 혼잡 속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보행자나 운전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처벌이 불가피한 것처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 시간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순응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나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학생 권리에 대한 규제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교육과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 방법 내지 수단이다. 학생 권리 보장 정책의 필요성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의

견이 나뉠 수 있다.

학생권리신장을 위한 방법은 법령정비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가 있다.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권리보장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①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정비이다.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주제인 '법령정비방안'은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그리고 학칙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오늘 제안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자치법규와 학칙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된 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학생의 권리의 한계) 개정안 제1항은 '학생의 권리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이 있다. 제2항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조문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동법 제18조의 6에서 현행 규정 상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신설된 18조의 6에서는 '교원'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교원으로 규정한 점,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는 문장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동법 제9조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동법시행령 제31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입법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② 학생권리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다.

가칭 '교육법센터'들을 많이 설립하고 민간위탁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법사업을 전개토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권리 신장은 법령정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적 물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이 직접 이런 사업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칭 '교육법센터들'이 설립되면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령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자료들을 작성하여 널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법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제안해온 것처럼 법전·법해설자료·판례해설·질의응답자료의 정리 및 배포·법교육자료의 개발 그리고 각종 상담 등 법관련 사업도 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권리 보장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 몇 번 정도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안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 권리에 관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법센터와 같은 상설 기구들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구들은 전국에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비롯하여 연구소 등에 둘 수 있으며 전문연구자, 상담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체벌이 유일한 훈육수단인가?-

(서울신문 사회2부 박현갑 부장급기자)

토론에 앞서 학생체벌 문제 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교육 이슈와 달리 사건이 생겨야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 수능 입시방안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업과 진학방식에 대한 정책은 제도개선의 영향력 때문인지 정권의 철학에 따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 결정과정을 둘러싼 뜨거운 진보, 보수 논쟁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 시에는 수정내지 폐지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늘 오르는 실정이다.

반면 학생 체벌 문제는 학생과 교사 간 물리적 다툼이 신문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뒤, 사후대책으로 거론되어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른바 오장풍 교사사건이 나오면 체벌금지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교사가 폭행당하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조치추진 등 교권 강화책이 나온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사후약방문식 땀질식 처방전만 남발한 셈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는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교육정책 당국이 결정하는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학생체벌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교육현안에 비해 중요도에서 뒤쳐진다는 것이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연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중요 추진현안으로 학생체벌문제를 포함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체벌문제가 사건화 되면 마치 핵심적인 교육문제인양 호들갑을 떠다. 성적위주의 교육 풍토가 불러온 교육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강인수 부총장님이 주제발표를 해주셨다. 학생체벌을 둘러싼 최근 이슈를 잘 정리해주셨다. 외국 사례까지도 있으니 객관적인 검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강 부총장님은 가장 핵심적인 학생체벌에 대해 기본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문 23쪽이다. 첫째는 체벌의 전면 금지 및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 도입이다. 둘째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행사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안은 허용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각 시도별 결정에 맡기자는 것이다.

저는 이 3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각 방안별로 2가지 문제를 고민해봤다. 각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이다.

우선 1안의 경우, 궤노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안으로 보인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궤노현 교육감 등의 입장과 달리 조례로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령위반인 만큼 법령에 체벌 전면 금지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3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전향적인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교육계가 학생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학교라는 공동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실제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개념정의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한다고 하는데 대체벌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2안에서 허용하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이 신체벌 성격을 띠는다면 이는 정신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신체벌, 육체벌 대신 정신벌로 대체한다는 표현 등이 적합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방안이 담고 있는 대체벌의 실효성 여부다. 대체벌 지도수단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상벌점제, 반성문쓰기, 봉사활동 등인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체벌대신 이 같은 방식으로 대체벌을 줬을 경우, 벌을 받아야 할 학생이 앞으로 다른 사람(학생, 교사 등)의 기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 체벌 대신 대체벌을 시행해봤는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벌을 도입해 효과를 본 학교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체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일부 외국에서 체벌 대체수단으로 학부모 소환제나 정학·퇴학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 2안이다. 손들기, 팔굽혀펴기 등 이른바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방안을 법령에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조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간접벌의 개념은 법령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시도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또 이 방안은 현행 방식-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징계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교사가 손이나 발 등 물리적 수단으로 학생을 직접적으로 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현행 방식보다는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한 단계 앞선 것으로 보인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집단으로 지도해야 할 교원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본다. 이 방안 역시 벌이 갖는 효과는 미지수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3안의 경우, 시도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벌 금지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법령의 범위가 어느 선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방안에서 말하는 법령이 체벌을 전면금지하자는 1안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은 허

용한다는 2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1안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2안인 경우, 각 시도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간접 벌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강 부총장님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학생체벌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징계처리 문제, 법령 조례 학칙개정 문제-등은 사실상 단일안으로 제안했다. 학생체벌 금지수위와 방법에 방향이 정해지면 이런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저도 동의한다. 추가하자면 모든 논의에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저는 결론적으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위해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 청소년법 강화도 아울러 주문하고 싶다.

학생 체벌문제는 우리 교육이 등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부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자제력과 양보심, 협동심 등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품성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르쳐왔는지 의문이다.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 때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꾸준히 보급, 확산시킬 때만이 학생 등 청소년 폭력문제는 줄 것이다. 나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위한 상담치료나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현재처럼 때리거나 대체 벌을 주거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지만 그 효과라는 게 그때 뿐이라면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 치유책은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나름의 특기를 토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편견 없이 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청소년 관련법에 대한 강화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행범죄가 증가하는 실정에서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이뤄져야만 문제 학생들로 인한 학교체벌 문제 또한 줄 수 있다고 본다. 문제아동을 정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로 학교 밖으로 돌릴 경우, 결국 또 다른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성숙한 학생권리 정책과 조화로운 학교교육을 위한 제언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우리 교육현장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만 해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사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교사의 체벌 역시 지금과는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는 물론 체벌의 당사자와 학부모 역시 어느 정도는 사랑의 매로 감내하며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 역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학생으로만 존재해도 제대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고, 어쩌다 선생님께서 체벌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이 잘못했거나 버릇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팽배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학교나 교사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 역시 인생의 멘토를 학교 교사에게서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교사의 체벌장면을 촬영해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학부모 역시 교사의 체벌에 학생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참기보다는 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직접 찾아가 따져 묻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의 행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사회적 공감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의 발전과정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 교원평가제도 역시 교사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사회로 갈수록 각 주체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오늘의 주제 역시 교육주체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발제자가 주도면밀하게 살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의 권리신장을 위한 법령개정의 초점은 첫째, 체벌금지, 특히 물리적인 체벌의 금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매로 대두되었던 체벌을 적극 권장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잘못이 있더라도 체벌 자체를 달가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교육감 선거 이후 체벌과 관

련하여 각 시도교육청마다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듯한데 이제라도 교과부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학교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은 교사내에서도 이루어져야하지만 교실내에서도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체벌에 관한 논의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는 이제까지 교단에 있던 수많은 교사들이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그 효율적인 제재수단으로 체벌을 행해왔을텐데 이를 수렴하는 시간 없이 법으로 규정해서 금지시키는 것은 교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먼저 공론화했을 때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비상식적으로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을 지도 걱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면 금지에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대체수단이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있거나 간접 체벌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의 제시안 중 학생 체벌의 제3안의 경우 법령의 범위안에서 각시도별로 체벌금지 정도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대체벌 지도수단이 명확해진다면 1안의 체벌의 완전금지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선의 팔굽혀펴기나 손들기 등의 제재수단은 교사에게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둘째, 학생의 사생활과 관련 부분에 있어 두발, 복장,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부분 역시 많은 논란이 있어온 부분입니다. 특히 창의성을 강조하는 요즘의 교육풍토에서 두발이나 복장 검사와 같은 부분은 반교육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의 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저 역시 학생들의 통제는 물론 학생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교육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자유보다는 교복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휴대폰 소지 역시 통제는 불가능한 시대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EBS인강을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 그저 휴대폰이 개인 사생활을 위한 잡담을 수단을 넘어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학생회 등을 통한 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학생의 자율권도 보장하면서 책임감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의 표현자유로서 집회·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집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큰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지금도 학기마다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칙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주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킨다면 더욱 민주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학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학칙제정과정에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도방법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특별교육이수에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출석정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퇴학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했던 항목이 많은 부분 객관화되고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발제문 전반에서 분명해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학생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레나 학칙에서 규정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법령으로 규정해놓듯이 징계위원회 역시 한 학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신장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의 권익신장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위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 시도별로 우열을 다투듯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어떤 시각으로 판단해야할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교과부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연월일 : 2010년 6월 7일  
(승계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조~제4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목적,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 교육감·학교설립자·학생의 책무를 확인

### 나. 학생의 인권(안 제5조~제2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장

### 다. 학생인권의 진흥(안 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의 날 지정,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및 보호자 교육, 교육감의 학생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의 학생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업무,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견 제출, 교육감은 2년 주기로 학교별 학생인권실행 상황 조사 및 개선조치 실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안 제39조~제45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및 겸직금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및 복무,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지역 교육지원청 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권 명시

마. 보칙(안 제46조~제47조)

학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육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바. 부칙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헌법 제31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 제2항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라.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제2항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0년 3월 23일 ~ 4월 12일(21일간)

나. 의견내용 : 덧붙임

## 7. 부서협의 결과

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1910, 2010.03.18.)

○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 8. 교육규제심사

가. 교육규제 여부 검토 : 복지법무담당관(복지법무담당관-1645(2010.03.18.))

○ 교육규제 여부 결과 : 규제사무 없음

## 9.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

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교직원)은 일기장(일기장)이나 개인수첩(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기록물)을 열람(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신중)을 기(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휴대폰) 소지(소지) 자체(자체)를 금지(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사유)와 제18조(제18조)의 절차(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휴대폰) 사용(사용) 및 소지(소지)를 규제(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

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 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 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 선 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인권담당 장학관 강 윤 석
	담당자 성명·전화	장학사 서미향(249-0214)

##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

제출자	해당 항목	제출 의견	제출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제5조 제15조	찬성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지지를 표명하며 제정되기를 바람	반영	
교사개인서명 (길형배 외 26명)	조례안 전체	찬성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면 청소년 역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함 등	반영	
개인서명 (고은경 외 223명)	조례안 전체	찬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	반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지회 고양지회	조례안 전체	찬성	천부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권보호 조항, 교육기본법, 초등등교육법, 아동학대방지법의 인권보호 조항등을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미래세대를 향한 최소의 애정임 등	반영	
의정부여성회 (회장 조동숙)	조례안 전체	찬성	위와 같음	반영	
의정부지역학교 운영위원협의회 (회장 김종국)	조례안 전체	찬성	위와 같음	반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양주지회 개인 (김영미 외 2명)	조례안 전체	찬성	위와 같음	반영	
참교육 학부모회 성남지회 개인 (이용욱 외 2명)	조례안 전체	찬성	위와 같음	반영	
개인 (유왕선)	조례안 전체	찬성	위와 같음	반영	

제출자	해당 항목	제출 의견	제출 내용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개인 (김혁)	조례안 전체	찬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예 고사항 모든 항목 찬성	반영	
개인 (허민석)	제2조	찬성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 사 람들 항목추가	미 반영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이란 용어의 정하여 진 정의가 명확치 않음
	제8조	찬성	학교별로 교과 선택 학습 실 마련운영	미 반영	현재 혁신학교 및 각 학 교에서도 교과선택학습실 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지속 추진예정인 사항